

		<h1>설 명 자 료</h1>	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총 3쪽(붙임 1쪽 포함)
배포일시	2017. 3. 24.(금)	담당부서	목재산업과	
담당과장	김원수 과장(042-481-4200)	담당자	이규명 사무관(042-481-1803)	

**(2017년 3월 23일, tv 조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)
"캠핑의 계절 '숯의 역습' 유해물질 34배 검출"**

<보도내용>

- 착화탄에서 이산화질소가 대기환경기준(3.4ppm)의 34배까지 검출되어 충격적임
- 숯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인 질산바륨의 안정성 기준을 과학적인 실험이 아닌 시중에 판매되는 숯 제품의 평균값을 허용치로 정해 믿을 수 없는 상황임

<산림청 입장>

- 본 보도는 산림청 관련 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착화탄에서 이산화질소가 대기환경기준(3.4ppm)의 34배까지 검출 부분에 대하여

- 착화탄 내의 질산바륨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는 흡입 장치가 있는 사용 환경에서는 연소가스의 99.9%가 제거됩니다.

이에 성형목탄 규격·품질표에서 배기가 잘되는 곳에서 사용하고, 구이용으로 사용 시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단순하게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위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.

질산바륨의 안정성 기준을 과학적인 실험이 아닌 시중 판매제품의 평균값을 내 허용치 정했다는 부분에 대하여

- 현 성형목탄 규격·품질 기준의 질산바륨 함량 기준(30%이하)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위해성평가(재활용제품의 위해성 평가기법 정립과 관리방안 수립, 2010,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자료)에 따른 바륨의 유해성 기준값(30.9%, 309,398mg/kg) 내에 설정되어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여 30%이내로 허용치를 정하였습니다.
- 현재 산림청은 성형목탄에 대한 질산바륨 등 위해성 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품질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, 장기적으로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착화제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 현재 '유해물질 저감형 성형탄 개발 및 일산화탄소 저감형 성형탄 대량제조 기술 개발'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참고 1

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(성형탄, 국립산림과학원 고시)

[숯가루성형탄의 규격·품질표]

숯가루성형탄 규격·품질		
상 품 명	○○ 구이탄	
종 류	숯가루성형탄	
원 산 지	○○○	
품 질	고위 발열량	○,○○○ kcal/kg 이상 (십의 자리 이상 표기)
	함수율(습량)	○ %
	첨가물	밀가루 : ○○.○ %, 질산바륨 : ○○.○%, (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)
무 계	○○kg	
생산자 (수입자)	주 소	○○시,도 ○○시,군 ○○면 ○○리 123-45
	성 명 (회사명)	홍길동 (또는) ○○물산
제 조 일 자	20○○. ○. ○.	

- ※ 안전사용법 : 1.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 중독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기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할 것
 2. 구이용으로 사용 시,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할 것